

의안번호	제16호
의결연월일	2021. 02. 17.

#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02월 09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2월 09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뉴딜경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외 거주 사유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“사업장” 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(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, 제6조제3호)
-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“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1조 공고에 따른다.” 로 변경(안 제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 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